

# 성과 계약서

(도지사 → 도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)

2022. 1.



# 경상북도 기관장 성과계약서

## 제 1 장 총 칙

제 1 조(계약의 목적) 이 계약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(이하 “기관장”이라 한다)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와 권한,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와 기관장이 성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보장하고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의 경영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(계약의 체결) ① 도지사과 기관장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, 성과계약서에 각각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.

② 성과계약의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제 3 조(계약기간) ① 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 성과계약은 전항의 계약기간중이라 하더라도 기관장의 사임 또는 해임,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.

제 4 조(기관장의 권한과 책임) ① 기관장은 기관의 최고경영자로서 기관을 대표하며 제반 경영활동을 총괄하고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② 기관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권한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과 「경상북도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, 기관의 정관과 제 규정 및 이 계약서가 정한 바에 따른다.

③ 기관장은 법, 조례, 정관과 제 규정 및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지며, 제6조에서 정한 경영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 5 조(임기 중 겸직제한 등) ① 기관장은 재임하는 동안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 다만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기관장은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기관장으로 재임하면서 알게 되었거나 취득한 기관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그 기밀을 이용하여 기관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.



③ 기관은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.

## 제 2 장 경영목표 및 경영성과 평가

제 6 조(경영목표) ①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는 <별표 1>과 같으며, 매 사업연도별로 도지사와 협의하여 연도별로 달성해야 할 경영목표를 결정한다.

② 기관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.

제 7 조(경영실적 보고) 기관장은 경영실적 보고 및 성과평가에 관련한 기본적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, 경상북도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, 경상북도 출자·출연기관 경영실적·기관장 성과계약평가 편람 및 실시계획 등에 따른다.

제 8 조(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) ① 기관장의 성과평가는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라 평가한다.

② 도지사는 대표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임시키거나 임기 중이라도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며, 그 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「지방 출자·출연기관 인사·조직 지침」과 경상북도 출자·출연기관 경영실적, 기관장 성과계약 평가 편람 및 실시계획에 따른다.

③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에 2명 이상의 기관장이 재임한 경우의 성과급은 개인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며, 그 기준은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연봉조정과 연임 또는 해임조치는 재임 중인 기관장에게만 적용한다.

## 제 3 장 보수 및 복리후생

제 9 조(보수체계) 기관장의 보수는 기본연봉, 성과급(성과연봉), 부가급여로 하며 그 지급 시기와 방법은 성과계약서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10 조(기본연봉) ① 기관장의 임기 중 기본 연봉액은 금78,900,000원으로 하며 매월 12분의 1씩 기관의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.



- ② 기관장이 임기 중 해임되거나 임기만료 또는 사망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 해임 또는 퇴임일이 속하는 월의 기본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- ③ 기관장의 비리 및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차년도 기관장의 기본연봉을 삭감할 수 있다.

**제 11 조(성과급)** ① 기관장의 성과급은 도지사가 정하는 지급률에 기본연봉 월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, 기관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달리 지급하며, 그 기준은 매년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- ② 성과급 지급 시기는 성과급 지급률이 확정 통보된 이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기관장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당해 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성과급을 퇴임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 이때 퇴임월 중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의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, 퇴임월 중 2명 이상의 기관장이 재임한 경우에는 당해 월중 근무일수가 더 많은 기관장의 재임월수에 산입한다.
- ④ 기관장의 비리 및 도덕적 해이에 기인하여 사회문제가 된 경우에는 도지사는 기관장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

**제 12 조(보수 지급후의 조정)** ① 기관장에게 성과급 및 연봉 등 보수를 지급한 이후에 조세 환급, 오류의 발견,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지급 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보수지급 시에 이를 가감 조정한다.

- ② 기관장이 중도에 퇴임할 경우 보수의 가감 지급에 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지급분과 반환분을 정산하여 중도 퇴임하는 기관장에게 지급 또는 반환받아야 한다.

**제 13 조(퇴직금, 복리후생 등)** 퇴직금 및 복리후생 등 기타 사항은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## 제 4 장 기 타

**제 14 조(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)** ① 이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요청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1. 정부 또는 도 정책,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을 변경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
2. 보수 등 계약내용에 관한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, 여건 변화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



3. 관계 규정 변경 및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

제 15 조(계약의 해석) 이 계약의 용어 및 계약 내용에 관한 해석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기관장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도지사의 해석에 의한다.

제 16 조(권리의 귀속) 기관장이 재임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개발한 발명품, 특허권, 등록상표, 아이디어 및 기타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재단에 귀속되며, 기관장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.

제 17 조(원천징수) 기관장에게 지급하는 모든 보수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제반 세금과 공과금은 기관장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수에서 원천징수 한다.

제 18 조(계약서의 보관)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계약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.

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는 위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함.

2022. 1. 27.

경 상 북 도 지 사  
이 철 우



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 
대 표 이 사 김 치 영



【별표1】 성과계획서

## 2022년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업무성과 계획서

### 1. 기관장 인적사항

소속	직위	성명	임기
경상북도 청소년육성재단	대표이사	김치영	2021. 1. 1. ~ 2023. 12. 31.

### 2. 업무성과지표 및 평가기준

평가영역	평가항목	지표명	비고
책임경영 (70%)	기관 경영평가 결과 (50%)	지속가능경영 (16.5)	기관 경영평가 결과 환산적용 (100%→50%환산)
		경영성과 (22.5)	
		사회적 가치 (11)	
	도정 연계성 확보 노력 (20%)	도정 연계성 (10) 도 발전 기여도 (10)	담당 부서 평가
성과목표 이행실적 (30%)	기관장 성과목표 이행실적 (30%)	성과계획 달성도 환산적용	기관장별 성과계약서 상 성과목표 달성여부 평가



### 3. 성과목표 및 실행계획

경영목표	세부지표	목표값	기중치	실행계획
1. 청소년안전망 및 예방상담 강화	1. 청소년 상담 및 심리 검사 지원	15,000건	4	• 개인 및 집단상담, 전화상담, 심리 검사, 기타 상담 서비스 지원
	2. 학교 밖 청소년 학업 및 자립 지원	2,210명	3	• 학습지도 및 기술훈련 등 자립지원
	3. 청소년 및 지도자 교육	8,500명	3	• 청소년, 부모, 상담자원봉사자 등 교육 실시
2. 청소년 잠재 능력개발 및 자기 주도적 역량강화	1.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	10회	3	• 지도자 전문연수, 안전교육, 포상제 직무연수
	2. 청소년활동 지원	90,000명	4	•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•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
3. 청소년이 행복한 수련 활동 운영	1.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자 인원(수)	7,700명	4	• 국가인증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•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 운영 • 홍보활동을 통한 유지 강화
	2.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	10건	3	•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과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·개선 * 청소년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및 수요자 욕구 반영
	3. 안전한 수련활동 환경 조성	12회	3	• 안전한 수련환경 조성을 위한 자체 안전점검 실시 • 외부전문기관 안전점검 실시
4. 현장중심 경영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	1. 시군 센터 지도·지원	80회	3	• 사업별 컨설팅, 슈퍼비전, 직무연수 지원